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9.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8일, 허성무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7.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9.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25.9.2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허성무의원)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어 기획재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기획재정부는 당초 각각의 부처가 관장하던 경제정책의 수립·총괄·조정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국가부채 등의 사유를 들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기능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오기형의원)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56조는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정부가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는 당연히 세입·세출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쳐야 할 것임.

그런데 2023회계연도 56.4조 원, 2024회계연도 30.8조 원이라는 유례

없는 세수결손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국채발행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없이, 국회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임의의 사업을 불용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였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세수부족을 핑계로 「국가재정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위반하고, 과거 결산 당시 국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음.

2008년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의 통합으로 기획재정부가 출범한 이래, 하나의 부처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정운영도 결국 기획재정부라는 하나의 부처 안에 예산기능과 국고기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허성무의원안 및 오기형의원안은 공통적으로 기획재정부를 폐지하고 재정·경제 및 예산 부문을 이원화하는 것임.

허성무의원안은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부를,

오기형의원안은 재정경제부 및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관급 기획예산처를 각각 신설하려는 것임.

現 기획재정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국고・세제・국제금융 등 기능과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기금 운영 기능을 통합한 형태임. 이는 예산・국고・세제 등 재정기능이 분산·운영되다 보니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가 취약하고, 국가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됨.[1)]

1)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의안번호 제178087호), 행정자치위원회, 2008.2.

【기획재정부 연혁】

부처명	출범시기	출범배경
경제기획원	’61. 07. 22.	▸경제의 합리적인 계획·효과적인 집행·지속적인 조정 및 계획적인 경제발전상황의 평가관리
재정경제원 (경제기획원+재무부)	’94. 12. 23.	▸세계화·지방화 등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고 강력한 정부를 구현 (※ 국가재정정책과 예산기능의 연계성 강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	’98. 02. 28.	▸대통령의 국정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위원회 + 예산청)	’99. 05. 24.	▸예산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개선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08. 02. 29.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

자료 : 행정안전부

이처럼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 총괄조정 및 예산편성 기능을 모두 가지는 거대기관이 됨으로써 총괄 및 조정기능에서 일정 부분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었다고 보이나,

개정안들의 제안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 내 기획·편성과 예산집행 기능 간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상호 견제가 충실히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역할 및 개별 부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독점적이어서 권한 남용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2)]

이에 기획재정부로 재정 및 예산 부문이 통합된 이후 18년 만에 다

2) “기재부 분리될까…대선에 걸린 예산권”, 머니투데이, 2025.5.4., “기재부 왕 노릇” 예산편성권 분리? 미국 따라 했다는데[사실은]“, SBS 뉴스, 2025.5.2., ”기재부 또 한 번 쪼개나요?“, 주간경향, 2025.5.5.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시 이를 분리하기 위하여 개정안들은 기획재정부를 폐지하되, 재정정책·세제·국제금융·공공기관 부문은 재정경제부에서, 예산 편성은 기획예산부(허성무의원안) 또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오기형의원안)에서 각각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 집행 및 편성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권한 집중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인바, 그 입법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들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들을 수용할 경우 예산 편성을 전담하는 기관을 독립된 '부'로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국무총리 소속 '처'로 둘 것인지에 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허성무의원안은 기획예산부를 신설하는 반면, 오기형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관급 기획예산처를 설치하려는 내용으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허성무의원안에 따를 경우 '부' 단위의 기관은 장관급 기관인 '처'와 비교해 조직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 관련 국민의 관심과 주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3] 등 의의가 있는 반면,

오기형의원안에 따를 경우,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처장'은 국무위

3) 참고로, 국가보훈처는 1962년 장관급 '처'(處)에서 2023년 '부'(部)로 격상됨으로써, 보훈행정 및 조직의 위상 제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지원 강화와 사기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원으로서 부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업무의 독립성이 있으나, '부'의 장관과 달리 독자적 부령권을 발령하거나 '소속 청'의 설치 및 정책수립에 관한 지휘권 행사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점 등 차이가 있으므로,

기획 및 예산 편성 기관을 어느 단위로 신설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4)]

둘째,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재정 및 예산 부문을 이원화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서 기획재정부 분리 시기를 점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음.[5)]

반면, 대부처주의(부처통합)의 경우 조직을 유지·관리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의 최소화, 개별 부처 간 정책 조정 단계가 통합되어 정책 결정의 신속화와 집행의 효율성 증대와 중복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측면[6)]이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통합과 분리 수행 시의 장·단점과 국내·외 경제 상황 및 정책 목표,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

4)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 총리실 등 이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집 관련 보도 참조

5) "기재부 분리론 군불때는 민주", 한경, 2025.4.23.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6) "대부처주의(부처통합)의 효과와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09-17, 조태준·황혜신,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경제·재정정책과 예산기능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시너지[7]와 속도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 요지

○ 기재부의 예산기능을 총리실로 옮기는 것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포기인바, 국가채무, 신용등급 악화, 경제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할 것임.

○ 역대 정부에서 실패했던 세입·세출 기능의 분리를 재도입하려는 이유와 기능 분리가 필요하다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모델로 회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

7) 기획재정부는 재정 관련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재정정책 일관성, 재정운용 효율성, 재정의 생산성 극대화가 가능한바, 개정안의 기능 분산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